

「2025년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」 초기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경기도지정형창업혁신공간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(팀)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화 지원에 참여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.

2025년 6월 30일

파주시장 · 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

1. 사업목적

- 경기도지정형창업혁신공간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(팀)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화 지원

2. 지원내용

- 지원사업명 : 2025년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초기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
- 지원 대상 :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
- 지원 규모 : 기업당 최대 4백만원 이내
- 지원세부내용

| 지원분야 | 지원내용 | 비고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용화 | 제품설계비, 제품디자인비, 시제품 재료비, 시제품 제작비, 금형제작비, 장비·기자재 사용료/임대료, 앱 개발비, 시험분석료 등 | 시제품만 가능, 양산 제품 제작 불가 |
| 마케팅 | 광고비, 브로셔/리플렛/포스터 제작비, 홍보영상 제작비, 홈페이지(앱) 제작/리뉴얼비, 전시/박람회 참가비, 시장/소비자 반응 조사비, 포장디자인 개발비, CI/BI개발비, 쇼핑몰 입점비 등 | '25년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마케팅 지원과 중복수혜 불가 |
| 인증 | 국내외 제품/기업 관련 각종 인증 비용 (인증관련 컨설팅비, 심사비, 시험비, KC 등) | |
| 지재권 | 신청과제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선행조사비/출원비/OA수수료/등록비, 저작권 등록비 등 | 건당 150만원 최대 2건 |
| 지원 불가 | 장비·기자재 등 자산성 물품 구입비, 사무용품/기타 소모품 구입비, 연습용 대관비, 여비, 회의비(식대, 다과), 개인거래, 기타 창업내용과 무관한 건 등 | |

- ※ 기업부담금 없음, VAT(부가가치세) 미지원
- ※ 선정공고일 이후 진행되는 사업화 지원분야 건에 한함

3. 제외대상

- 정부, 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화 지원을 받은 업체
(중복지원 불가)
 - ※ 세부 지원내용이 다른 경우 타 기관 지원과 무관
- 국세, 지방세 체납업체(신청접수 시 확인)

4. 선정방법 및 기준

- 선정방법 : 서면평가
 - 선정평가표 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
- 평가항목

| 항목 | 배점 | 평가내용 |
|-----------|----|--|
| 역량 및 의지 | 20 | ○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, 사업추진 의지 ○ 사업화 유사실적 및 지재권, 인증 등 보유여부 |
| ITEM의 우수성 | 20 | ○ ITEM의 독창성, 차별성, 우수성 ○ ITEM의 완성도 및 신뢰도 |
| ITEM의 시장성 | 20 | ○ 해당 ITEM의 국내외 시장 성장전망, 유망성 ○ 해당 ITEM의 시장 대비 비교우위 경쟁력 |
| 사업화 가능성 | 20 | ○ 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○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 완료 가능성 ○ 해당 ITEM의 시장 진출 가능성 |
| 기대효과 | 20 | ○ 사업화에 따른 매출, 수출, 고용창출 가능성 ○ 기업성장에 미치는 가시적 성과창출 가능성 |

- ※ 동점 발생 시 ‘기대효과’, ‘역량 및 의지’, 사업화 가능성’, ‘ITEM의 우수성’, ‘ITEM의 시장성’ 항목순으로 고득점자에 우선순위 부여
- 지원대상 선정결과 : 선정업체 개별 통보 예정

5.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
- 신청방법
 -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5.07.06.(일)까지
 - 신청방법 :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(minji9504@gtp.or.kr)
 - 제출서류

| 제 출 서 류 | 제출부수 | 작 성 방 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가.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| 1 | ▪ [서식 제1호, 제2호] 필수서류 작성 |
| 나. 개인,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| 1 | ▪ [서식 제3호, 제4호] 개인,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|
| 다. 중복지원 금지사항 협약서 | 1 | ▪ [서식 제5호] 중복지원 금지사항 협약서 작성 |
| 라.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 | 1 | ▪ 공고일 이후 발급분(각 1부) |
| 마. 사업자등록증 사본, 각종 인증자료 (해당시) | 1 | ▪ 사업자등록증 상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본사 소재 必 ▪ 지재권, 인증, 투자유치 등 자료(해당시) |

○ 유의사항

- 선정기업의 창업 아이템과 무관한 과제 신청시 지원제외 됨
- 제출서류 미비,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(기업)의 책임으로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- 접수기간 내 일부서류 누락 등 신청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
 -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·제출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
 - 신청자격에 맞지 않은 경우
- 전담기관은 과제 진행상황 점검 등에 따라 참여기업에게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를 할 수 있음
- 사업화 지원내용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참여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문제 등 발생할 시 사후정산 지원금을 지급 거부할 수 있으며 다른 다양한 사업 참여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

6. 문의처

-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실 031-940-9796~7